

제391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29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10093)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7)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75)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7)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9)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5)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2)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0)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1)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0)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1)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1)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61)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5)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2)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8)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1)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3)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4)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6)
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27)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1)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8)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8)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03)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6)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8)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9)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1)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9)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9)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70)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70)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0)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19)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6)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2)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1)
4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3)
4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6)
5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080)에 관한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3) 3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7) 4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4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 4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5) 4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7) 4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9) 4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 4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 4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2) 4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0) 4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1) 4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2) 4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 4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1) 4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1) 4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861) 4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5) 4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 4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 4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	4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	4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	4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	4
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	4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1)	4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8) ...	4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8)	4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3)	4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6) ...	4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8) ...	4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9) ...	4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1) ...	4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9) ...	4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9) ...	4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0) ...	4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0) ...	5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0) ...	5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9) ...	5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6) ...	5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2) ...	5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 ...	5
4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3)	5
4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6)	5
5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1.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에 관한 공청회	12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한 후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상황

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에 회의장은 회의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

- 의)(의안번호 2110093)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7)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873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5)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7)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9)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2)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0)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1)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1)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1)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861)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5)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
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538)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541)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
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04531)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2107258)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07748)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12303)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3926)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318)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349)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351)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969)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979)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470)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570)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880)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9)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6)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2)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
4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3)
4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6)
5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
지 이상 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욱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
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FIU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
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시·도지사도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등록 대부업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감독 기관에 따른
제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으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
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구
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
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 용어 변경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을 추가하
려는 것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 방지 등의 긍정적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탁 등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탁중앙회의 금리 인하
요구 준용 규정을 조합과 같이 하여 별도 조문으
로 신설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
삼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으로 요구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예시하는 등 일
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문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정문 의원
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을 지
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
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지급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3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안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문 의원, 윤주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의 위탁사업 근거를 마

련하고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희곤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11월 24일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명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4대 전략과 17개 목표를 구체화하여 안 제5장의 시책에서 규정하는 등 김병욱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정훈 의원,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조정 신청 제도 개선,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낙찰 결과 공개,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및 동의를결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윤창현 의원, 홍성국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 안민석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패 교육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 특별 교육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봉민 의원, 김성원 의원, 최형두 의원, 정희용 의원, 송재호 의원, 이개호 의원, 최승재 의원,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설날 및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현행 규정에 비해 2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 중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0항까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제1항 및 제2항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부터 제16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신정훈 의원, 윤창현 의원, 김경만 의원, 이용우 의원, 김병

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과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 윤창현 의원, 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홍성국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정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홍성국 의원, 안민석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41항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봉민 의원, 김성원 의원, 최형두 의원, 정희용 의원, 송재호 의원, 이개호 의원, 최승재 의원,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5항까지 이주환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 윤주경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공청회 실시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이 있어 오늘은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

○윤창현 위원 현안질의……

○위원장 윤재옥 현안질의 있어요?

○박용진 위원 예.

○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여야 한 분씩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가 예약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일단은 질문할 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이네요. 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여쭙볼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화면 좀……

○**박용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윤창현 위원** 예.

○**박용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시간을 줍……

○**위원장 윤재옥** 아, 맞아요.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제가 오늘 금융위원장님하고 또 국무조정실장님 두 분에게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지금 보상금도 지급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2019년 7·8·9월 매출 대비 2021년 7·8·9월의 매출 대비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각지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2019년에 창업을 했거나 혹은 재창업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비용으로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그해에 무슨 매출이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 분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 만나면서 길거리에서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각지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방역에 협

조했는데, 그래서 최근에야 배달로 전환을 한 식당이 있어요. 배달로 전환하니까 조금 매출이 올랐지요. 오히려 이분은 2019년에 비해서 더 매출이 올랐다 이래서 또 역시 이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를,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초로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처음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괜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고승범** 예.

○**박용진 위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 고통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민들은 곡소리 나는데 은행권은 약간 콧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요, 또 우리 금융 당국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련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조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대금리는 축소하고 가산금리는 인상되고 이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 또 대출받아서 2년째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주식 투자에 나섰던 개미투자자들, 이런 분들 완전히 지금 정말로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출 받은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에서 한 1.75 정도로만 올라도 이게 엄청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생필품 가격으로 치면 갑자기 생필품 가격이 20%, 30% 올라 버린 거예요. 이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비용은 계속 서민들이 내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은행권이 ‘때는 이때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는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이익 남기고 그걸로 상여금 잔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데 이때 또 국민들 곡소리 나는 상황에 우대금리 축소하고 금리는 높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은행권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가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하고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지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손실보상법을 시행하고 나서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3만 개 사가 정부 손실보상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2만 개 사가 확인보상을 요청한 상황이니까 하여튼 굉장히 국민들 수용성이 높고 이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확인보상을 요구하는 작은 소상공인들이라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손실보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고승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고, 또 최근에 미국도 통화정책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또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대마진 문제라든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은행들이 또 예금 금리를 올리고 그런 움직임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예대마진 이런 추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이라든지 소상공인, 가계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부실 원인 분석보고서와, 삼정회계법인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인데, 근거는 금융감독원 등에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주체가 돼서 부실 분석을 했는데, 저기 보십시오.

1번 불법 PF 대출, 2번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명백한 불법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부산은행 오너들이 건설업 83개, 해외투자사업 10개 해서 120개의 회사를 자기가 설립을 했어요. 자기가 설립을 하고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부산저축은행과 5개 계열사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다 대출을 줍니다, 그렇게.

얼마냐? 4조 5942억, 4조 6000억, 총 5조 2000억의 87%입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한테 자기가 법인대출을 하고 이익 나면 자기가 챙기고 손실 나면 고객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수사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76명 기소, 42명 구속, 34명 불구속, 오너 12년 징역, 부회장 10년 징역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다음번, 세 번째입니다.

신용위험 내부통제, 조금 나아지지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회사들이…… 나인하우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시지요, 나인하우스? 모르십니까?

다음, 일반 PF 대출.

저기 보십시오.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수사할 당시에는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대출이다, 당시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가, 몇 년 지나서 이 강길이라는 분이, 그 회사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밝혀진 거고, 당시에 대출은 저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번·2번·3번·4번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1번이 제일 악성 대출, 2번이 그다음, 3번은 약간 문제, 4번은 정상 대출, 그 정상 대출로 분류된 부분에 대한 수사 이게 과연 이루어졌어야 했느냐는 것.

그리고 이게 진짜로 문제 있었다고 그러면 금감원이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문제 없음’으로 분류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보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사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 이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래서 저 자체의 분류를 통해서 제일 문제가 많은 120개 회사, 1번·2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에 수사역량이 집중됐는데 금감원이 분류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 글썄요, 지금 제가 처음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해서…… 금감원이 만일 저기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수사가 엉망이 됐다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 글썄요, 당시에 제대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지적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고승범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우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쪼개기 제재가 있었지요.

그리고 특히 하나은행의 당시 함영주 행장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미비, DLF 판매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라든지 할 때는 가중징계를 받지 않을 걸로 보고 뺄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 원장님께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징계 대상자가 중간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원장이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원에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금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 사모펀드 판매 내부통제 마련 위반으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서 제재적 대상에

서 뺏다’ 이렇게……

금융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6조의2는 동일한 시기에 경합할 경우에 가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징계를 받아서 경합이 안 돼 뺏다? 거꾸로 간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 ……

○이용우 위원 사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감독원의 감사의견서가 피감사기관으로 통보, 소명,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재 사전통지서가 제출됐어요. 그러면서 제재 대상자가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제재 대상자가 변경된 사유와 공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금감원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가중하는 게 맞는데, 앞의 규칙에 의하면 임직원은 2회 이상일 때 가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세칙으로 내려가면 직원은 3회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은 2회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밑의 세칙에는 직원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3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 자료들도 제출해 주기를 요구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고승범 감독원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실장님과 금융위원장님, 지금 IBK 배구단 사태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선수가 이탈하고 코치 바꾸고 감독과의 관계……

그런데 이게 단순한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고 IBK은행 자체의 레пут레이션(reputation)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의 레пут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이것 잘 처리를 못 한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챙겨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챙겨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이 또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1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손실매출액에다 영업이익률을 곱한 것, 결국 영업이익이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고정비,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나온 그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적다고 아우성들이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고정비에서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다 주는 줄 알았더니……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뺐니까? 관리비는 임대료에 안 들어갑니까? 어떤 데 보면 관리비가 임대료만큼 되는 데들이 있는데 임대료는 주면서도 ‘관리비는 임대료 아니잖아’라고 빼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비도 고정비잖아요, 당연히 들어가는.

또 하나, 인건비에서 알바비를 뺐니까?

저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직히 임대료에서 관리비 빼고 인건비에서 알바비 빼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줘서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위원님 말씀한 게 아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요, 아까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런 부분을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그래서 악수도 생략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1.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에 관한 공청회

(10시48분)

○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발달로 P2B 대출, P2P 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하는 신종 사기 범죄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박재호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이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5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행연합회 디지털·소비자그룹의 이경희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박광 소비자국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중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유사수신 범죄들이 이제는 금융 그다음에 정보, 사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들이 계속 지능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실제 지금도 악성 앱을 설치한, 50대·60대 이런 고령층에서도 앱을 설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범죄들은 지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유형들을 통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과 정보, 사기가 결합된 범죄가 대단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유사수신행위나 보이스피싱이 다르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에 관련한 범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남에게 사기를 치고 기망을 해서 돈을 편취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범죄 유형들이 아마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단계 같은 경우도 일반 금융상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ICO, 암호화폐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보이스피싱도 처음에는 그냥 부모를 사칭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피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확장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핀테크를 비롯한 가상자산이랄지 다양한 금융 방법과 결합됐을 경우에 이러한 범죄들은 더더욱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범죄를 하나씩 하나씩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통합된 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법제들이 사실상 사후적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고, 또 실제 범죄자들의 그런 행위들을 보다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가 되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통신사기 피해 방지법에서는 일부 피해자 보호랄지 이런 조항들이 있지만 나머지 법률은 그게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불법 정보, 계좌 임시조치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다양한 실제 대응 수단들이 각 개별 법률에 하나하나, 각 개별 범죄에 하나하나 사실상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통합된 법제를 통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거냐는 논의가 있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관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의를 할 때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들은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에 회의랄지 또는 R&D 회의랄지 다양한 부분에 참석해 봤었는데요, 범죄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보니까 실제 부처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사람이나 서로 이해하는 수준들이 대단히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근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대근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파이낸셜뉴스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꼭 보도가 아니더라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만 명가량의 사기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0% 넘게 사기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범죄에서도 사기는 한 13%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22%가량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요.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사기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액을 낳았던 절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게, 2017년인가부터 사기 피해액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사기 또는 사기와 관련된 유사한 규제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법안이 바로 이 다중사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 범죄의 가장 중요한 피해 중의 하나는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는 피싱과 같은 형태가 빈번해지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피해가 정말 심각해서 서민의 금융 또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서도 실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법상의 사기뿐만 아니라 금융업에서 하는 금융 유사 범위까지 포괄해서 사기 범죄를 규율하고 이른바 법정형도 높이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사기 범죄는 영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습 범죄자가 굉장히 많은 형태라서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액의, 다수의, 불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개별 법률의 여러 가지 규제 방법, 규제 방법들이 사실상, 몇 년 전에 비해서 150%가량의 증가,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법안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상습 사기 범죄자들의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계속 회사를 차려서 영업하고 투자를 유인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른바 유죄 확정판결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같은 형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소송의 법리를 도입해서 피해자 구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국가가 정기적으로 사기 범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데요.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늘어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변화하는 사회문화를 포착해서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기술적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규제책을 세우고 법안을 제시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여러 입법자분들께서 가장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 법안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두서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요컨대 이 법은 기존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는 개별 법률의 규제를 통합해서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서민계층에 대한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사기 범죄 규제가 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재조치들을 좀 더 다원화해서 입체적인 규제를 통해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중

요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입니다.

먼저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법안에 대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신·변종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을 통해서 유사수신행위를 방지하고 영국,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고찰해서 금융사기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의 유효성입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무인가 영업은 현행 유사수신행위로 포섭 가능하고요, 무인가 금융업을 다중사기범죄에 포함시킬 실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 모집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인가 금융업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법안상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인 다중사기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 상이한 만큼 이를 단순 통합하여서 피해금 환급 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특정 무인가 자금조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형사실체법인 반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원 소송절차의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소위 민사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에서 규율하려

는 다중사기범죄가 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현행 유사수신행위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각각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확대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정당한 금융거래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금융회사는 다중사기범죄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유사수신행위는 그 원인행위가 금융서비스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소위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의 확인만으로 원인행위인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실무적으로 많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의견입니다.

금융회사의 판단이 곤란한 영역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을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수단의 확산 등에 따라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의 다중사기범죄 외에 금융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범죄에 형사법적 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넘어 형사피해자의 구제에 금융제도를 직접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금융범죄법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해서 신속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사기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희 안녕하세요?

은행연합회 이경희 상무입니다.

은행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쟁점을 크게 법률적 문제와 그에 부수하는 실무적 문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발달과 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변종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개별 조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대부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형사적 측면에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응하고자 예외적으로 도입된 특별법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피해금 추적이 어려우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 없이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집행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단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속히 자금을 편취하며 범죄 수법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가 없던 계좌에 갑작스럽게 고액이 입금된 후 인출되거나 오픈뱅킹을 통해서 피해자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수 분 내에 연속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정황 파악 등을 통해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노력의 결과 상당 부분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무

인가 금융업자와 당사자 간 상당 기간 투자 또는 금전거래 관련 협의를 거친 후에 장기간 다수의 대상과 거래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금융회사의 거래 내역 확인만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폰지사기의 경우 수사 등을 통해 사기 거래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거래가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으로 지급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은행에서 실무상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특정 무인가 자금조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정상 수익률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을 기대하며 직접 본인의 의사를 밝혀 투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지급정지 및 후속조치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 제정안 19조 1항에서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서 다중사기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급정지제도는 피해자의 손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지급정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피해방지가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그 해당 여부는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일률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인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지급정지제도가 오남용되고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도 제도를 악용한 허위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인이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에 금융

회사에 유선으로 신고하면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쳐 즉시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해당 계좌 명의인의 전 금융권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공개한 다수의 상거래 법인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의 진술에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및 해당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를 일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인 간 거래행위로서 금융서비스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및 피해금 환급 등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수사 및 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우선 이정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네 분의 진술인분들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하신 자료도 제가 이미 살펴봤고요, 오늘 또 진술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님께 신종 유사수신행위 피해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P2P 플랫폼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또 패션킹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 거의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면서 빠져나가는 신종 사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원장님께서도 이 P2P 플랫폼 사기를 유사수신행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실장님,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P2P 플랫폼 사기가 현행 유사수신행법에 따라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대근 김대근입니다.

먼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이 있고,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형태, 방금 말씀하신 형태는 저는 처음 들어 본 것이기는 한데 충분히 짐작이 가는 형태고요. 이른바 P2P 형태는 금융을 빙자한 형태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기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태를 법이 일일이 사전적으로 규제해서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들이 필요해서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적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업이 아닌데 금융을 빙자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띠어서 기망하는 형태의 범죄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유사수신행법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른바 투자사기 또는 투자를 가장한 형태의 다양한 사기가 있어서 유사수신행법만으로는 그런 현상들을 적발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매우 큼니다.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법들이 다 있는데 범죄가 지금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150%가량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기존 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현상 또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매우 중요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현행 유사수신법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벌이 불가하다면 유사수신법을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단독 법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좀 전에 말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안처럼 포괄해서 이렇게 한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피해 예방과 처벌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대근 일단 말씀하신 그 현상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먼저 유사수신법에 적용이 되면 관련 법 처벌규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래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실익은 그런 개념들을 다중사기라는 이름으로 좀 더 유사수신법을 포함해서 사기 범죄와 금융 유사행위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익은 두 가지인데 신속한 피해자 구제, 앞에 다른 분들은 지급정지라는 개념을 부정적이고 은행업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런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나 더 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실은 아마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상습 범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습 범죄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는 그런 사람이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공지함으로써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 법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개별법 규제나 아니면 통합법 규제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일이 개별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법을 하나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질문을 꼭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신 김기범 교수님께서 1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을 간신히 체계화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만 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 ‘간신히 체계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경희……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송금을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서 지급정지 요청한 후에 이렇게 하는 피해, 이런 블랙컨슈머적인, 참 얘기하기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유형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법 혹은 다른 법에 있는 건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고.

그리고 윤 교수님, 20페이지에 보시면 영국의 금융범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표현해 주서 가지고,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에다가 적용하거나 참고할 만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 죄송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기범 질문 감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기범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신히’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 이 법에서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해서 실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공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집어넣었고요.

또 하나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항목을 말한다고 해 놓고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를 규정하면서 다시 또 하나 예외를 규정해 놓은 사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법안의 개념이 계속 바뀌어 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사기죄에 공갈이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개념이 정착되고 법집행이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진술인 이경희 일단 피해구제 절차에서 보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유선으로 서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정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급정지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3영업일 이내에 경찰로부터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안별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공개한 법인에게소에 소액을 송금하고서 거꾸로 지급정지 요청한 다음에 합의금 요구하고 이런 역으로 이용하는……

○진술인 이경희 예,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윤창현 위원 처벌은 잘되고 있어요?

○진술인 이경희 처벌 부분은 경찰이 일단……

○윤창현 위원 경찰에서?

○진술인 이경희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인 윤승영 감사합니다.

영국의 금융범죄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입법됐고 2018년 1월부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조문을 소개한 이유는 계좌동결명령, 이 법안 중에서도 어카운트 프리징 오더(Account Freezing Order)가 지금 우리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법안에 있는

계좌 지급정지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소개했구요.

이 AFO는 법원이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범죄수익이거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이후 감독 당국에 동결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AFO는 민사적 구제의 일환으로 소위 시빌 오더(civil order)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구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우려를 제기해 주고 계신데 그 이유가 결국 형사적 기준에 따라 압류 혹은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국의 AFO는 민사적 제재기준에 의해서, 소위 민사 보전명령의 수준에서 시빌 오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계좌 정지, 다만 금융회사가 이러한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 저희가 참조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지금 네 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약간 기초가 달라서, 특히 윤승영 교수님이나 이경희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작용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범 교수님이나 김대근 실장님께서 이 사안 자체에서 어쨌든 법을 독립된 입법을 만들고 포괄 입법을 만들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아까 블랙컨슈머 이야기할 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불충분하다면 이런 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의견을, 김기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술인 김기범 부작용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블랙컨슈머랄지 이런 일부적인 개별적 사안들은 별도의 형사처벌로 해도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 지급정지에 관한 것도 물론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법집행

하는 현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범인을 잡고 안 잡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피해자들의 몇천만 원, 몇천억 이 돈을 빨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이체되면 불과 몇 분 안에, 일 이십 분 안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그런 피해구제나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만들어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급정지도 보다 빨리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112에서 신고를 받고 112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들, 이런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면 충분히 금융기관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그런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김대근 김대근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특히 지급정지의 오남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고소제도가 있는데 오남용이 늘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청이나 이런 제도들은 언제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가려내고 선별하는 과정들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형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말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협박이나 공갈,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형태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또 윤승영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영국의 법안도 2017년 법안입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사기 범죄에 가장 선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영국조차도 적극적으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법원에 의한 조치는 다 아시겠지만 사후적인 측면이고 절차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같은 검찰과 경찰을 활용한 또 는 시장의 자율성과 사적 영역의 존중이라는 측

면에서 금융 당국의 선제적인 예방책,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를 막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법안을 보시면 그래서 형사 제재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집단소송이나 심지어는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대 규모가 5배밖에 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는 수백 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민사적 제재 방식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기형 위원 실장님, 지금 약간 포인트가 서로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도도 무고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의 제도적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사상 징벌 배상은 별도의 제도인 것 같고요. 지금 질의와 연관성이 없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제도로써 발의하면서 고민했던 그 문제의식은 이해하는 거지요.

다만 지금 윤승영 교수님이나 이경희 상무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실제 제도 집행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 또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판단 자체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면 그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과태료 부과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서로가 그것에 대한 갈등 없다,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토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꼭 결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 제기인데 어떠십니까?

○진술인 김대근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히 따라가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제 입장…… 이런 지급정지 같은 형태가 남용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제도는 남용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늘 있어서 아마 좀 더 시장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재, 그러니까 규제가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고죄를 말씀하셨지만 무고죄 같은 고소 자체를 방어하는 형태의 법안도 있는데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영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 지금 진술인들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별개로 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급정지를 하게 하자, 이를 또 금융사한테 책임을 보내자 하니까 금융사들이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모르겠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부분을 불법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바로 은행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수용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이스피싱에서도요 초창기에 지급정지할 때 이러한 논의는 똑같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경찰이랄지 검찰이랄지 금융위원회랄지 이런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또 실제 그러한 형태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큰 부작용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세스나 전례를 벤치마킹하면 관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우리가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섞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의 경우하고 유사수신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양태가. 보이스피싱은 원샷으로 뺏어 가는 거고 유사수신행위는 지속적으로 투자금과 이익금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에다 과태료까지 때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기범 저는 그것은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방법을 집행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 또는 알기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 사실 이러한 제도를, 지급정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보이스피싱은 이것을 집행하는 시점이 대개 앞에 선제적으로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유사수신행위에서는 이러한 지급정지하는 시점이 좀 더 증명 과정을 거친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점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좀 더 본질적인 법적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다중사기범죄의 정의는 기존 법률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렇지요?

기존 법률에 있는 정의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범죄가 나오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포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 법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새 법을 만들어서 기존 법의 정의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두 법을 섞어서 하나 만들고 새로운 유의 양태가 나오는 것은, 이 법을 또 새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데 기존 법을 개정해서 하면 안 되고 새 법을 만들어서 또 개정까지 해야 되는, 정의는 그대로 들고 오는데, 이 부분은 법 제정안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기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되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률에, 물론 일부 지금 포섭이 안 되는 영역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포섭이 된다고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사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법률에서 피해자 구제랄지 다양한 조항들이,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랄지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랄지 이런 조항들이 모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개별 법안 자체의 중복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통합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법률이 차라리 뒤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대근 혹시 제가 보완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수영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모자라서, 우선 금융위에 질문 좀 해야 되거든요.

○진술인 김대근 죄송합니다.

○박수영 위원 금융위 국장님, 지금 진술인들 진술 들어 보면 보이스포싱도 그렇고 유사수신행위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커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 새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융위의 입장은 어떨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행법 개정을 해서 규율할 수는 없는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어떤 입장입니까, 도대체?

팩트부터 체크해 주시지요. 보이스포싱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박광 일단 이 법 취지 자체가, 신·변종 유사수신행위나 기타 금융사기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보이스포싱이나 이것에 대한 피해구제나 이런 것은 좀 전에 이경희 상무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유사수신행위는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박광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 통합법 말고도 별도의 유사수신행위 개정안이 따로, 이 법과 유사한 개정안이 따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옥 또……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성국 위원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국 위원 예,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윤승영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의 법이 다 있는데 뭐 하러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글로벌 추세가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공정과 아니면 금융…… 공정하다든가 공정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이 이 속도로 오다 보면 기존의 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큰 골격을 이루는 이런 포괄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술인 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지금 발의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법안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모든 앞으로의 신·변종 유사수신행위 등을 다 포괄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가 갖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금융범죄법처럼 오히려 좀 더 포괄적으로 가되 다만 이러한 금융시스템이나 소비자 보호에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저희가 담아 놓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금융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스포싱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FDS라고 하는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을 통해서 이상금융이 일어나면 저희가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점점 발전해서 최근에는 이상거래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다수를 이미 시감위에서 적발을 하고 그것이 금융위원회 또 증선위를 거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제도라는 시스템 안정과 함께 궤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 이경희 상무님, 금융기관에서 이런 법 때문에 실제 경영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을까요, 불편하고? 지금은 어떨습니까? 솔직한 내용……

○진술인 이경희 일단 보이스포싱과 유사수신행위의 차이점은 보이스포싱 같은 경우는 소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 사전·사후 징후가 있어서 수많은 부분들을……

○홍성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비용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진술인 이경희 전체적으로 은행별로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스포싱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전담인력을 10명에서 30명 정도 두고 이상거래 징후를 탐지하고 또 캐치해서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보이스포싱이라는 부분을 다시 인지시키고 이

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홍성국 위원** 글로벌 은행에 비해서 전담인원이 한국이 훨씬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진술인 이경희** 일단 한국이 더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국 위원** 자금세탁 방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씨티은행이 10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삼십 명 갖고 하거든요, 사이즈는 우리나라 은행이 훨씬 큰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경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좀 핑계 아닐까요?

○**진술인 이경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에서 30명은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서 전담인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성국 위원** 물론 지점에도 있겠지요.

○**진술인 이경희** 그 이외에 각 정부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특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유사수신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보이스피싱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국 위원** 제도가 현상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법이 항상 지연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부족한 법들은 다시 조정해 나가고 너무 강한 규제는 조금 완화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윤승영 교수님이나 이경희 상무님도 이것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규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경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윤재옥** 윤주경 위원님 꼭 질의해야 되겠어요?

○**윤주경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윤재옥** 2분만 드릴게요.

○**윤주경 위원** 지금 이 법이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법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게 제일 큰 골자인 것 같은데요.

김기범 교수님하고 김대근 선생님께 여쭙겠는

데, 계좌동결이라는 것은 정말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계좌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똑같이 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일어난다면 기업 입장에서 부작용, 그러니까 기업은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진술인 김기범** 예, 피해가 엄청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이스피싱만 놓고 보면 잘못 지급정지돼서 피해보다도 빨리 지급정지 못 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피해가 크지 않은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망해야 되는 기업은…… 이것은 규모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회사도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면 그렇게 막 아주 좁은 것으로, ‘이것 동결했다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업은 잠깐의 동결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려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술인 김기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1분, 2분, 3분 가지고 지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돈 5000만 원, 1억, 10억이 그냥 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빨리 정확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정확한 정보로 정확히 타기팅해서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지 이것을 늦추거나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윤승영 교수님 그리고 이경희 상무님, 법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정도는 은행에서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 기업의 계좌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범죄 목적의 계좌인지 그 정도는 은행에서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딱 보면 거래의 빈도라든지 계좌 발급 일

자라든지……

저는 그런 부작용을,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 기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경희 상무님, 지급정지가 돼서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은 사례가 있나요?

저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우리나라 은행이 어떤 은행인가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게 정상적 계좌인지 의심되는 계좌인지 정도를 은행에서 분간 못 할까요? 저는 은행연합회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 기업을 보호하자는 거지 국민에게 사기 치는 기업을 보호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연합회가 와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면 은행원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논의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모든 위원들이 다 알 거예요. 다만 개별법이나, 통합법이나.

그리고 저는 통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법은 범명 자체도 원래는 처벌하기 위한 범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박재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이 범명이 갖고 있는 의미만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금융의 다중사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법은 포괄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난번에 머지포인트 사건이 있었지만, 다양한 디지털 금융사기 범죄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앞장서서 나가셔야 되지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 갖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정말 큰 실망입니다. 저는 은행연합회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경희 상무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급정지가 돼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없었지요?

○진술인 이경희 일단 사회적인 범죄에 은행이 공공성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진술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오기형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진술인 이경희 진술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꽃집이라든지 이런 계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은 상거래 하는 계좌라든지.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다 입금하고 그것은 사기용 계좌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더……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작은 기업의 모든 계좌를 다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상.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기업은 아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 정상적 꽃집이면 의심거래로 정지 안 시키겠지요, 은행원이. 왜 예를 그렇게 드세요?

○위원장 윤재옥 어쨌든 위원님들, 진술인의 입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일단은 존중하고 논리적으로도 문제 제기할 것은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우 위원님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보면 아까 FDS와 계좌 동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면 노 유어 커스터머(Know Your Customer), KYC가 있어서 그 계좌가 평상시 거래되는 계좌인지 아닌지를 개설할 당시부터 체크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악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있어야 될 게, 수법들이 계속 바뀌는데 FDS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통과를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패턴이, 예전에 있던 패턴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저런 패턴이 나오면서 패턴을 해 놓고 하는 거고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좌 동결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받으면 바로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실행 가능한데 아예, 지금 드시는 예들 자체가 별로 발생한 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가 훨씬 더 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고객들, 금융소비자들한테 은행이 레퓨테이션(reputation)을 지키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저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될,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채워 나가야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상무님, 잠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희**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굉장히 피해와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형 위원** 마이크를 좀 대세요, 마이크를.

○**진술인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각 지점에서도 그런 부분 얼러트(alert)를 가지고 계속 보고 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용우 위원** 그래서 은행원의 급여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버는 수익을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게 은행의 의무예요.

○**위원장 윤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민형배 위원님 2분 질의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제가 자료집을 꼼꼼하게 봤는데요.

김기범 교수님하고 김대근 실장님, 지난번에 박재호 의원실하고 입법토론회 할 때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통합 제정법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던데.

그런데 당시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현행법을 피해자 구제 때문에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장옥환 검사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 통합 제정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선 이 다중사기 범죄는 블록체인이랄지 핀테크랄지 기술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이런 형태들로 결합을 막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게 대개 서민들

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야겠다 이런 관점도 있고, 또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범죄수익 추징하고 피해자한테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좀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두 분이 아마 통합 제정법을 말씀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 지난번에 토론회 때 진술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기범** 먼저 금융위원회로 들었는데 예외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종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 당시 참석했던 검사님께서 했던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벌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적 규제나 또는 사후적으로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대근**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은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그 당시에 많은 질의와 논쟁이 오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포괄 규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예를 들면 2007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가 보험법이나 은행법, 증권법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개별법이 있는데 왜 통합법이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자본시장법이 충분히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점차로 개별법들은 기본법에 통폐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사이트의 차단, 불법음란사이트 차단하는 문제도 왜 통신망업자들이 이런 부담을 져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은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하게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이른바 시장 행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 행위자들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의무 또는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성을 말씀하시는데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일 텐데요.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주의와 금융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특히 사회 취약계층들의 신뢰와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또한 법률안 심사 등 심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의원실 보좌 직원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그리고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전 재 수 진 선 미 홍 성 국

○청가 위원(1인)

권 은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용	준
전 문 위 원	김	상	수
전 문 위 원	정	대	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 장	구	윤	철
재정금융정책관	임	형	철
국가보훈처			
처 장	황	기	철
기획조정실장	민	병	원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조	성	욱
기획조정관	이	순	미
금융위원회			
위 원 장	고	승	범
기획조정관	유	재	훈
금융소비자국장	박		광
국민권익위원회			
위 원 장	전	현	희
기획조정실장	임	윤	주

○출석 진술인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윤승영(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희(은행연합회 디지털·소비자그룹 상무)

○출석 위원(23인)

강 민 국	김 병 욱	김 한 정	김 회 곤
민 병 덕	민 형 배	박 수 영	박 용 진
배 진 교	송 재 호	오 기 형	유 동 수
유 의 동	윤 관 석	윤 두 현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창 현	이 용 우	이 정 문